

특허청 공고 제2022-2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화된 회복요건을 반영(안 제6조의2)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